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. 4. 19 선고 2022가단8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

담당변호사 홍승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

변 론 종 결 2023. 3. 22.

판 결 선 고 2023. 4. 19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(1)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2020. 4. 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(2)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. 4. 27. 접수 제8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D 주식회사는 2002. 7. 15. C을 상대로 2001년경 C의 신용카드회원가입에 따라 발생한  
카드이용대금채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(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소24200). 법원은 2002.  
8. 21. 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,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원고는 2003. 10. 24.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 상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.

원고는 2012. 3. 12. C을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 상의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 
발령받았고(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차453, 신청일 2012. 3. 6.), 이는 2012. 3. 31.

확정되었다.

원고는 2021. 11. 29. C을 상대로 위 같은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, 즉「2,675,000원 및  
이에 대하여 2003. 10. 25.부터 2012. 3. 16.까지는 연 17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 
연 20%, 2015. 10. 1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
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」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재차 발령받았다(수원지방법원  
평택지원 2021차전5804, 신청일 2021. 11. 15.). 위 지급명령은 2021. 12. 21.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아버지인 E는 2020. 4. 15. 사망하였다.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, C, F, G, H, I 총  
6명이 있었다.

위 상속인들 전원은 위 상속개시 이후의 시점으로서 그 즈음 E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 
부동산(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이를 피고에게 협의분할하기로  
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협의분할’이라 한다).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7. 피고 앞으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
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(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. 4. 27. 접수 제8946호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9, 10, 11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,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원고의 주장 요지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협의분할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.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중 C의 상속지분 1/6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1. 나.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3. 사해행위 여부

가)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취소로서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. 10. 24.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고, 그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. 3. 6.에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현재 원고의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,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D 주식회사가 2002. 7. 15. C을 상대로 이미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제기를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바 그 때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확정으로 인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다가,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2. 3. 6.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재차 중단되었고 그 확정으로 인하여 다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, 다시 그 지급명령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. 11. 15.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확정시켰는바, 위와 같은 소제기, 이행권고결정 및 각 지급명령의 신청 및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고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이 이유 있으므로,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

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, 이와 같은 법리는 매각뿐만 아니라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같은 실질을 가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,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음이 인정되고,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, 결국 이 사건 협의분할 중 C의 상속지분 1/6에 관하여서는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.

#### 4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, 갑 제7, 8호증, 을 제3 내지 8, 11,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판단된다.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고,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①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원금은 비교적 소액의 카드대금 채권이고,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 인한 채무 외에는 J보증보험에 대한 135,000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,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성질 및 가액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와 C이 밀접한 인적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 및 C의 사해의사 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.

② 피고는 2020. 4. 27. 자신을 제외하고 C을 포함한 피고의 형제들로서 E의 상속인인 5명 모두에게 7,500,000원씩을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른 대가로서 계좌이체한 사실, C에게 또한 그 명의의 K조합 계좌에 대하여(계좌번호 1 생략)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그 송금한 대가가 상속인들 모두에 대하여 균일한 점, 피고가 C의 채무면탈을 위해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이라면 그 대가를 C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을지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③ 원고는 위 대가가 유사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염가인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해의사가 부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먼저 갑 제8호증의

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대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부당한 염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, 설령 다소 과소한 가격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C 및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인적관계,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상태 및 피고가 그 사용 및 매각을 위하여 별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대가의 지급이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.

## 5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디모데

별지